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600
----------	-------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결과
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59	허성무의원	2025. 2.27.	제429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2		2212710	오세희의원	2025. 9. 5.	제429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2025. 11. 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 업소위원회 회부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11. 20.)에
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
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
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정책 관련 전문 연구평가기관에 대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보조금은 운용에 경직성이 있어 중장기적 연구과제 기획 및 추진이 어렵고 전문연구인력 유치, 다른 기관과의 합동연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7항)
-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 다. 정부가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제3조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성장성 등을”을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로 한다.

제20조의2제7항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4항 중 “운영 등”을 “운영 및 사업”으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를 “출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u>성장성 등을</u>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 <u>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u>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 ⑥ (생략)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u>설치·운영할 수 있다.</u>	⑦ ----- ----- ----- ----- <u>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 ③ (생략)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한다.

1. ~ 7. (생략)

<신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
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
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 ⑧ (생략)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
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 및
사업-----
-----출연할 수 있다.

⑤ -----

-----.

1. ~ 7. (현행과 같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위탁받은 사업

9. -----제8호-----

⑥ ~ ⑧ (현행과 같음)